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3 ~ '27]

-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

2023. 1. 19.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개 요	1
II. 추진배경	2
III.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3
IV. 정책환경 및 실태	7
V. 기본방향 및 체계	11
VI. 분야별 추진과제	13
[전략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 13
[전략 2]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16
[전략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 20
[전략 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 24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 27
VII. 추진일정	30

I. 개요

- (개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 (주요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 ◇ 예술인의 복지 증진
- ◇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 ◇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 ◇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 등

- (추진경과) 예술인복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현장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포괄적인 기본과제 마련
 -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20.2~10월)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21.4~5월)
 - 예술인·전문가·정부로 구성된 분과회의 및 자문회의('21.3~6월, 25회), 예술인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실시('21.6월, 8월, 2회)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의견 수렴 실시('22.3~11월)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상 의견조회('22.2월, 12월)
 - 예술인·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22.10~12월, 4회)

II. 추진배경

-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제22조)
 - ‘예술인’은 예술활동의 ‘시작점’이자 예술로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인적 기반’으로 건강한 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존재
 - 예술인이 창조적 영감을 통해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예술인복지법(11.11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1.9 제정)
 - 국정과제(57번)에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명시(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 등 포함)
- 예술인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다른 직군에 비해 상해,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이 부족
 - 프로젝트 기반의 불연속적 고용 형태 및 낮은 수입, 구두계약 문화 등의 현장 특성*으로 예술 활동 전념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
 - * ‘프리랜서’ 활동(75.2%), 낮은 서면계약체결 경험률(48.7%), 낮은 수입(연 1,200만원 미만 86.6%) 등
 -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부분이 없도록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마련 필요
-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고려할 때, 예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투자’

“예술은 최초의 기본적인 정신활동이며 그것은 모든 다른 활동이 자라는 토양이 된다.” (20세기 영국 미학자·철학자 R.G.Collingwood, 「예술의 의미」)

 -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임무
 - 단기적 시야 및 공급자 편의주의를 벗어나 전체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장기적,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제1차 기본계획은 ‘예술인’이 창작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 존경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제시, 체계화에 주안점

Ⅲ.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성과

□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도 마련

-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시행('12.11.18.)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12.11.19.)으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체계 마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9.24.)·시행('22.9.25.)과 전담부서 신설(예술인지원팀, '22.9.1.)로 권리보장 추진체계 마련

□ 예술 분야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설('19.6월), 예술인 창작준비금 대폭 확대 및 자녀돌봄 지원(주말·평일저녁 등, 대학로·마포) 등 창작안전망 구축

- (복지예산) '18년 278억원 → '20년 809.3억원 → '22년 1,020.8억원(한시지원금 1,012억원 별도)
⇒ 5년새 3.7배 규모로 증가
- (자녀돌봄 연간 이용자수) '14년 1,563명 → '17년 3,185명 → '22년 4,826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20.12월) 후 적극적인 예술인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제도 설계* 및 보완** 지속('22. 11월 기준 가입자 16.2만명)

- *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단, 50만원 미만 다수계약 합산도 가능)
- ** 고용부 협의 등을 통한 사업주 확인 요건 명확화, 가입 편의성 제고 등('21년)

□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보급('13년~, 11개 분야 71종) 및 서면계약 위반 조사권, 시정명령권 신설('20.6월) 등으로 공정계약 기반 마련

- * 전자계약 지원, 상담·교육 등으로 서면계약 체결률 대폭 확대('15년 29.7% → '21년 48.7%)

- 예술인 신문고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 및 구제 사각지대 보완

- *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1,474건에 대해 시정조치·화해조정·소송지원 등 조치('14.6~)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247건에 대해 심리상담·법률상담·소송지원 등 지원('18.6~)
- ** 예술인 68,347명 대상 계약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권리보호 교육('17년~)

(2) 개선할 점

□ 단편적 복지정책 ⇒ 종합적 예술인 정책으로 발전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적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정
-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있으며, 복지 지원이 창작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 연결고리 부재
 - * 복지정책 성과목표는 복지정책 수혜자 수 등 1차적인 사업 산출물로 한정
- (국제적 기준 고려) 소득·건강·주거 등의 협의의 복지를 넘어서 지위 및 권리보호, 교육·훈련 지원 등 유네스코 권고* 수준으로 확장 필요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1980)] 모든 회원국은 예술인이 사회적·경제적·도덕적으로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주요 정책 범위로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노동정책, ▲예술활동 여건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직업단체 결성 지원,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등

□ 현물 지원 복지정책 위주 ⇒ 사회보험 강화 등 정책 다양화

- (시혜성 이미지) 직접적인 생계 지원 사업이 예술인 복지정책을 대표, 코로나19로 예술인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되고 현금지원 더욱 확대

■ (창작준비금) '16년 4,000명(120억) → '20년 15,260명(458억) → '22년 21,000명(600억)

* 연간 300만원 지원(신진예술인은 200만원)

■ (지방정부 지원 대표사례)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1인 100만원) 등 지자체별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 현금성 지원 확대는 정책 대상 특징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적시 지원이 어려워지고 행정 부담 누적되는 악순환

* (예술활동증명 신청현황) '21년 69,294건으로 '19년 26,866건의 260% 수준으로 급증

- (정책 다양화 필요) 지원금 수혜를 받는 일부가 아닌 전체 예술인의 상황에 시선을 돌려 다양한 제도적 방안 검토 필요

⇒ 국제적 기준을 고려, 협의의 복지정책을 넘어서 복지정책이 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서 목표 재정립, 사회보장 제도 확대

□ 공급자 중심의 정책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 (경직적 제도) 일률적 기준에 의한 지원으로, 경력 주기 및 활동 특성에 따른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부족
 - 일반 근로자와 포괄적 '예술인' 간 직업환경 차별성에 집중하여 예술인 복지정책이 설계, 11개 예술 장르*의 개별적 특징에 대한 고려 미흡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상 문화예술 정의규정 준용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분야 포괄
 - 복지대상 특정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으로 정책 초기 지원의 공정성 및 지원 범위 확립에 기여했으나, 제도 경직성은 높아짐*
 - * 경력단절,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신문고 이용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제도 운영
- (수요자 맞춤 대응) 세부 장르별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미시 정책' 개발 및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도 적극 수용
 -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공정성은 지키면서 유연성 높게 탈바꿈

□ 미약한 협력체계 ⇒ 범정부·협력적으로 연계성 제고

- (협소한 추진체계) 넓은 '예술'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각 분야별 정책 부서 및 지원기관과는 연계성 없이 복지정책을 수립, '정책의 힘' 부족
 - 현재는 사안별로 필요시만 협력*하고 있으며, 장르별 별도 협력 네트워크도 부재하여 여러 기관이 협력 필요한 문제 해결 어려움
 - * (고용보험) 제도홍보 등, (창작준비금) 예술인소득수준평가정보 활용 등(복지재단-사회보장원)
 - 중앙-지역 간 관계도 예술활동증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정책방향 공유나 효율적 전달체계 부재
 - * 광역 지역문화재단을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로 지정·운영(14개) 등
- (다양한 주체와 협력) 복지정책은 노동, 고용조건, 사회보험 등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 기관 간 협력 및 현장 소통 필수
 - 부처 간, 부 내, 공공기관 간,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방안 모색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다양한 주체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필요

<참고: 예술인복지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

- (1970년대)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지원에 초점
 - 1970년대까지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또는 '예술활동'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음
- (1980년대~2000년대) 예술계 스스로 예술인 지위 개선 노력 시작
 - 1981년부터 예술계 스스로 예술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2000년대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언급되기 시작
- (2011년) 예술인 복지정책 시작(「예술인 복지법」 제정)
 - 생활고로 요절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정책 논의가 본격 진행되어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2년 이후 ~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 본격화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시작
 -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도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2015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구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 2016년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2017년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 2018년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2019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작
 - 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시행
 -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2022년 국정과제에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체계 확립” 명시(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 등 포함)

IV. 정책환경 및 실태

1. 정책환경

(1) 거시적 환경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코로나 19 유행으로 세계 대부분 국가 경제성장률 크게 하락하였다가 회복세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년 -1.1%로 역성장, '21년은 4.1%, '22년은 2.1% 성장(예상) 등으로 경제회복 추세
 - 경상수지 개선은 소비증가로 이어지나, 문화예술분야 소비는 다른 분야 보다 늦게 회복되어, 문화예술분야의 위기 극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 경제적 피해는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 미쳐,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 증가, 특히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의 경우 복지정책의 역할 및 다양화 요구 늘어나는 상황
- (인구·사회적 변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시작으로, 소비시장 및 생산인구 축소, 노년부양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은 증가
 - * '20년 평균 세대원수 사상 최저치 2.24명, 1인가구 9백만세대로 39.2% 차지(행안부 발표)
 - 경제인구의 부담증가는 문화예술 소비에 악영향, 문화예술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 및 예술의 자생력 저해요소로 작용
- (문화·기술환경 변화) 5G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산업의 급속한 부상으로 예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 확대 예상
 - 새로운 채널 확대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표준계약서, 권리보호교육 등 권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개념의 예술인 정의 필요해지는 시점
 - AI 작곡, 가수 및 모델 출현 등 새로운 기술·환경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필요

(2) 문화예술 환경변화

- **(코로나19 장기화)** 많은 예술행사 취소로 프리랜서 등 비율이 높은 예술계는 장기적 예술활동 중단은 더욱 치명적이며, 다수 예술인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 * △(예술사업체) '21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 4,237개 공연단체 중 재정규모 5,000만원 미만 66.1%로 매우 영세(코로나 이전 '18년 3,634개 단체의 55.6%), △(예술인) '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활동 연간수입 695만원에 불과, 소득 매우 열악('18년 1,281만원 대비 45.7% 감소)

-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사회보험제도를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면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개선과 지위·권리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
 - 시행 2년 만에 보험가입자 16만여 명 가입 등 제도의 활성화 모습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사업주 행정부담 완화 지원 등 필요

- **(문화예술 융·복합)** 전통적 장르간 경계 붕괴, 예술인의 다양한 장르 분야 동시 종사 경향 증가 등 예술 생산방식 다양화
 - 새로이 달라지는 예술인 종사형태, 직종, 장르구조 등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개념 필요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22.9월 개정)에서는 “문화예술”을 현행 “장르의 나열”에서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폭넓은 규정으로 변경

- **(지역예술인복지 수요)** 중앙과 지역간 단계적으로 협업 확대중이나, 아직은 중앙중심적 정책전달 구조로, 지역 예술현장의 인식 저조한 상황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예술인 지원 위한 조례 제정·시행 중이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규모에 한계
 - * 예술인 복지법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17개 광역 지자체, 47개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 시행,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10개) 중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예산 등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22 지역예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및지원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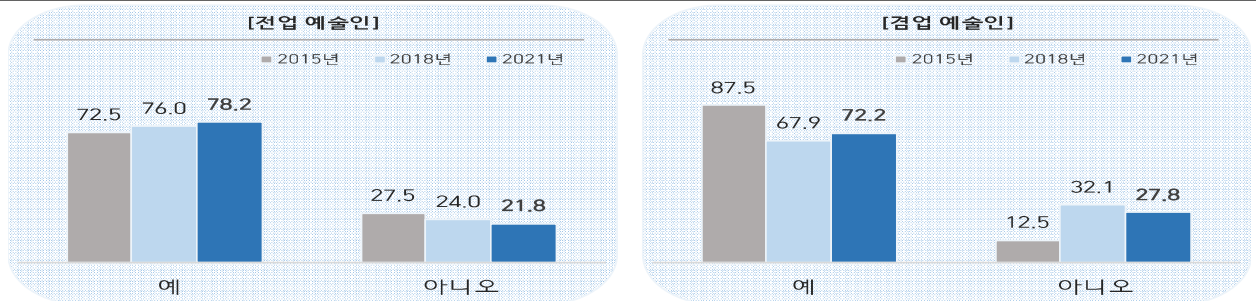
2. 예술인 창작환경 실태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중, 복지실태 위주로 발췌(문화체육관광부, 2021.9.30.~12.6/5,109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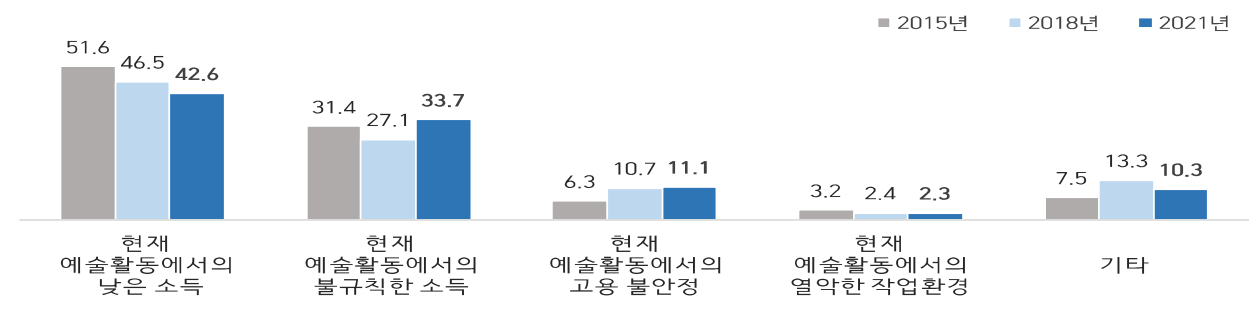
□ 예술활동

- 예술인 대부분 자유계약자(75.2%)로 활동하고, 일용직·기간제 등 단기 일자리 또는 1인 사업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는 주로 '낮은 소득' 및 '불규칙한 소득' 등 소득 관련 사항이었음(76.3%)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종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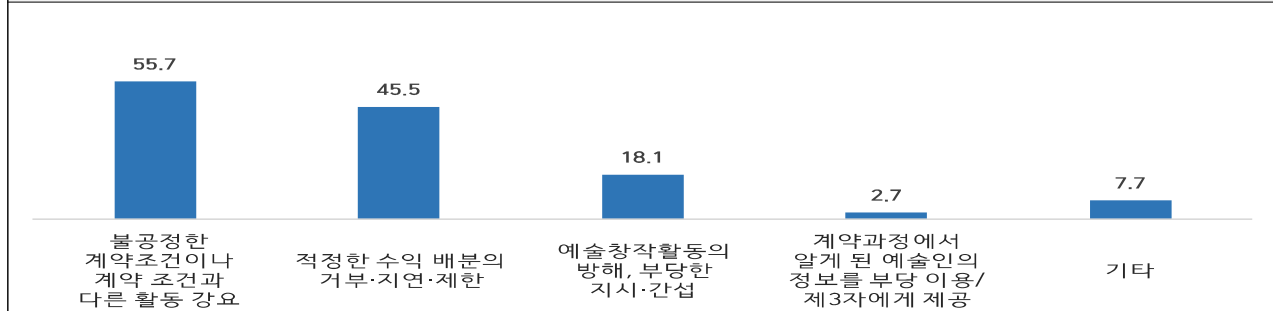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



□ 근로환경

- 예술인의 지난 1년간 서면계약체결 경험률은 48.7%, 그 중 표준 계약서 사용은 66.0%였으며, 부당한 계약 경험은 11.2%였음.

부당한 계약 내용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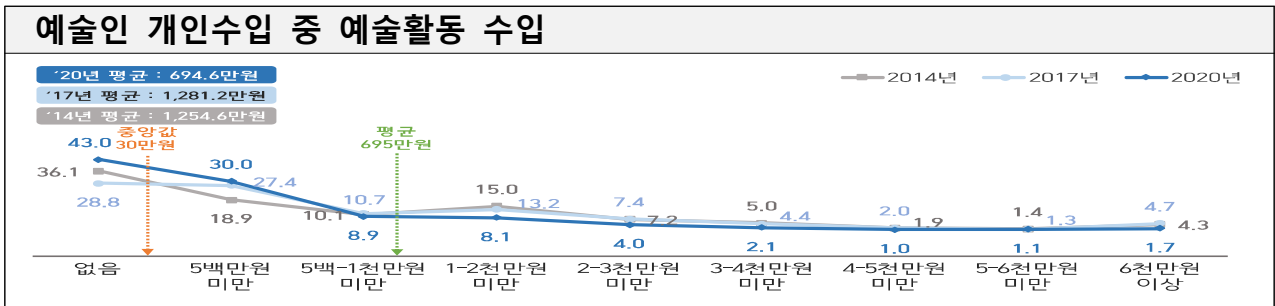


- 특히, 예술인의 업무상 상해 경험률(4.9%)은 근로자 산업재해율*(‘21년 0.63%) 대비 7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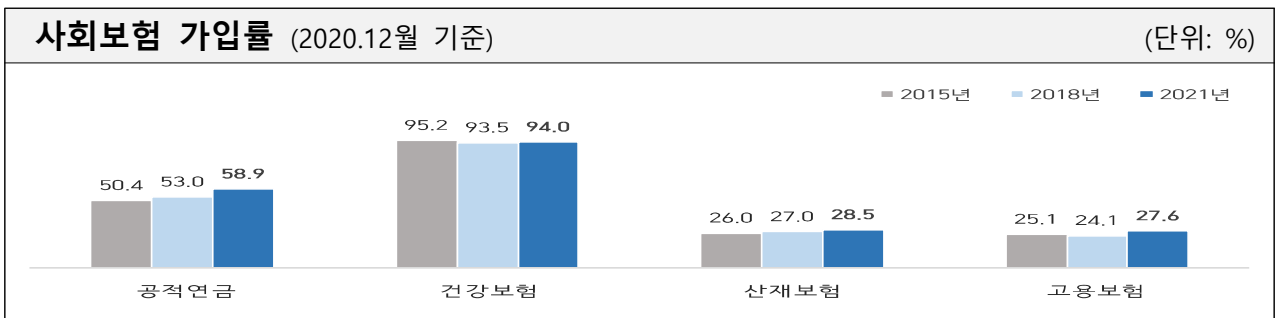
* 근로자 산업재해율(‘20년 0.57%→‘21년 0.63%, 산업재해 현황분석)

□ 생활기반 및 복지

- 예술 활동 연간 수입 1,200만원 미만 비율이 86.6%로, 평균 695만원으로, 최저임금제 기준 2,187만원의 31.7%에 불과, 가구 총 수입 평균은 3,972만원
- 예술활동 및 가구 총 수입 평균액 모두 '14, '17년 대비 크게 감소



-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
- 국민연금 등 58.9%, 건강보험 94.0%,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
- * 근로자의 가입률 국민연금 91.7%, 건강보험 91.5%, 산재보험 97.8%, 고용보험 90.5%
- 고용보험 인지도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73.8%로 사회보험에 대한 안내와 가입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의 56.3%가 개인 창작공간(집안 29.3%, 집밖 27.0%) 보유, 크기는 평균 41.3㎡, 보유 형태는 임대(월세, 전세, 무상)가 높았음(60.7%)
- 예술인이 예술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45.5%*로 일반 국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31.5%(‘20국민건강통계)보다 월등히 높았음
- * 스트레스 요인: 낮은 보수수준(45.6%), 예술활동을 위한 시간부족(21.6%), 감정노동(9.8%)

V. 기본방향 및 체계

1. 기본계획의 방향

- (기본방향)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구체적으로 구현

“F” (Fully covered)	“A” (Available to all artists)	“I” (Interconnected governance)	“R” (Responsive to various needs)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	경력단계별 예술인 맞춤형 정책	범정부·다양한 주체의 협력	정책의 다양성 제고 및 다양성 강화

- (정책목표) 협의의 복지정책을 넘어서 직업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
 -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전반적인 시장의 건전성을 고려,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 추진
- (정책대상)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
 - ‘예술인’ 시각에서 지속적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 예비예술인부터 원로 예술인까지 경력단계별 예술인 포용하는 예술인 맞춤형 정책 수립
- (정책거버넌스) 범정부·다양한 주체간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고용조건·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 협력 강화, 장르별 담당 부서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등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 간 협력·보완적인 관계 설정, 예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 (정책범위) 예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 예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교육·훈련기회 확대, 합리적 처우 등 정책 외연의 확장
 - 예술의 다양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다양성 높이고, 예술 창작지원·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 연결성 강화

2. 비전 및 전략 체계

비전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목표

- »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진
- »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 보장 추진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③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2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④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⑤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⑥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 ⑦ 예술인 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 ⑧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⑩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 ⑪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 ⑫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 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추진 체계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Ⅵ.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 ◆ '예술인' 중심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법·제도로 혁신하면서, 통계와 정보에 기반한 촘촘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 마련

①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 (예술인 정의)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 규정(제2조제2호)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대상 명확화('23)
 - '예술인'과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을 분리 정의하여, 일반 정의 규정과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복지정책 관련 법·제도 정비)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 확립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위상 및 역할 재정립('23~)
 - 「예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검토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추진목적)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으로 혁신하여, 복지정책 대상 여부 확인에 투입되는 비효율 개선(복지법 개정 추진 '22~)
 - 활발히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과 예술활동 '증명' 부담을 덜고, 예술인 본인의 경력관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예술활동증명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예술활동확인제도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년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5년 단위로 일원화
신청시,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번거로운 활동 증명	→	20년 활동 이후 재신청 면제
		활동 발생 시 수시 실적 등록, 활동내용 자동확인으로 편의성 제고

- (심의의 효율성)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광범위한 활용 현황 등을 고려 충분한 적응기간(과도가→도입기→정착기)을 두고 전환 추진
 - ('23년) 직업예술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 비효율 제거를 위해 ▲유효기간 통일(3년·5년→5년), ▲20년 이후 재신청 면제 추진, 처리기관 분산 등 법률·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 ('23~'25년)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고도화* 통한 예술활동 자동확인 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변화에 따른 심의기준 개선(현장의견 수렴) 등
 - * 시스템 컨설팅 및 ISP수립('23) →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구축('24)
 - ('26년 이후) ▲예술활동 상시 등록 및 자동확인 시스템 운영, ▲개인별 경력관리 서비스 제공 등
- (심의의 공정성)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3중 논의 구조(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를 통한 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 전체에 부정한 증명 발급 사례를 공유, 교육 진행하여 공정한 심의 지원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로드맵]

구분	2023년	2024~2025년	2026년 이후
	과도기	도입기	정착기
로드맵	절차 간소화 및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예술활동 발생시 상시 등록, 확인제도로 전환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 개정('23) · 절차 간소화('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경력단계별, 장애 유형별 세부방안 마련('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확인 제도로 전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 ISP 수립('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고도화 추진('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26~)

③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 (예술인 실태조사 개선) 조사 유형 다양화 및 설문 체계화 등 추진
 - (조사 다양화) 현행 3년 주기 '예술인 실태조사'를 ▲예술인 실태조사(종합),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 3종으로 확대 개편
 - 중복항목 조정, 신규조사 설문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근거 법률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5조제2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9조
조사 내용	예술인 생활·창작·소득 등 종합 실태	불공정 피해 업무재해 실태 등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실태
비고	국가 승인 통계	신설	신설

- (시행주기 조정)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반영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주기 단축 검토(3년→2년, 복지법 개정 사항)
 -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격년으로 조사 실시 추진('24~)
- (분야별 실태조사 연계) 방송·콘텐츠산업 등 산업분야 종사자 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와 데이터 연계 분석 방안 마련 등
- (데이터 활용) 예술 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 마련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연계) 예술활동증명과 사회보장위원회 보유 통계의 연계·교차를 통해 예술인 복지실태에 대한 다층·심층적 분석 추진(문체부·사보위)
 - 사회보험정보(4대보험 등), 사회보장정보(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근로·사업소득 등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실태 파악 시범 추진('23~, 한국문화정보원)
 - (예술 분야 직무체계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직무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예술기업 통계 및 지원 기반의 근거 마련

■ 현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소분류)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코드 901), (세분류)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분류 → 실제 예술현장에 나타나는 직업과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분류, 업종 지원 및 통계 기반으로 활용

- (지원정보 플랫폼 활성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를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홍보 강화(지속)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플랫폼 → '아트누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 플랫폼 → '아트모아'(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추진방향

- ◆ 예술인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도입 다각도 검토, 의료·돌봄지원, 창작준비금 내실화, 맞춤형 창작·주거공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21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소득관련 사항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76.3%), △예술인의 창작공간 보유형태가 주로 임대형식(60.7%)이며, △스트레스 인지율이 45.5%로 일반국민(31.5%, '20국민건강통계)보다 월등히 높았음

1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가입 대상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23~, 고용부·문체부)
 - * '22. 11월 기준 162,343명 가입, 구직급여 1,991명 혜택(가입인원 대비 1.2%)
 - 보험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예술인 등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홍보·상담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수혜자 확대
 - * 맞춤형 온라인 안내·홍보콘텐츠 개발·제작 확대('23년 3.7억)
 - 국고보조금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지원 사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안내('23~, 매년)
-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선) 예술 현장에서 산재 발생 시 예술인 재해보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23~)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포럼 운영('23년~, 고용부·문체부)
 -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공공분야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대상 홍보 등 지원('23~)
-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 해소를 위한 가입 지원 및 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보험료(30~50%, '23년 5억), 산재보험료(50~90%, '23년 5억) 지원

- (금융서비스 지원) 의료비·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당 최대 700만원)·전세자금 대출 등 저금리 금융서비스 제공('23년 180억원)
 - 용자회수금 등 적립금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보험 등) 검토
- (사회안전망 다양화)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공제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 * 기초 연구 및 예술계 의견 수렴 등 추진('23~)

2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 예술인의 심리적·정신적 고충 해소와 심리적 건강을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확대 추진('23~)
 - (예술인) ('22년) 9억원, 940명 → ('23년) 14.5억원, 1,300명
 -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등 예비예술인도 포함, '23년 2,300여회 지원(4억원 내외)
 - 상담사 공동연수 정기 개최(연 2회) 및 분야·유형별 사례집 발간('24), 예술인 맞춤형 상담을 위한 연계기관 확대 지속*
 - * ('22년) 전국 37개 예술인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 → ('26년) 50개로 확대
- (자녀돌봄 지원) 활동 시간이 비정기적인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 돌봄을 제공하는 지원* 모델 정립 및 확산
 - (추진계획) 예술인 자녀 돌봄 시설 운영모델 정립(~'23년, 연구용역 추진) → 시설 수요조사 및 시범 사업지 선정('23~'24) → 시범사업 운영 추진('25년~)
 - * '22년 기준 반디돌봄센터(대학로),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 등 2곳 운영 중
- (상해예방 및 치료지원) 신체상해 많은 무용 예술인 중심 상해 재활·치료비, 부상 예방 검진 지원 등 지원 지속(전문무용수지원센터)
 - * 정책적 지원·육성 필요성 확대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발전 방향 기초연구 추진(~'23)

③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적정 예산으로 폭넓게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개선 지속 추진(23년 23천명, 660억원)
 - (수혜자 확대) 소득 배점 세분화 및 최초수혜 가점 상향,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중복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수혜 범위 확대('23~)
 - * '22년 상반기 1회 이상 중복지원 비율 39% → 30% 수준으로 개선 검토
 - (창작활동 연계 강화) 활동보고서* 관리 강화를 통해 창작준비금의 실질적인 창작활동 기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3)
 - * 현재 활동 결과(또는 계획)을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운영 중
 - (부정수급 방지)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참여 제한 기간을 확대 (5년→10년)하고, 3회 미제출 시 영구 제한*하여 사업관리 강화('23)
 - * ▲미제출 1회: 5년 참여 제한 ▲2회: 10년 참여 제한 ▲3회: 영구 제한 등
- (수혜자 맞춤형 컨설팅) 관련 문화예술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혜자 분야, 소득,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 * '아트누리(문예위)', '아트모아(예경)' 등 기 운영 중인 문화예술분야 정보 제공 누리집과 연계
 - 창작지원을 위한 수혜자 대상 강연 및 성과공유회 등 개최

④ 예술인 생활·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 (예술인 맞춤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주거공간 및 예술활동에 적합한 특화공간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국토부·문체부, '23~)
 - 예술인 대상 주거지원과 연계하여, 예술인 지원 사업 설명회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문화재청·지자체·문예위 등)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천 예술인 주택·웹툰 융합센터(850호, '23.7월 준공예정)



◇전주·밀양 예술인주택·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전주96호, 밀양100호 '25.12월 준공예정)



◇예술인 테마형 공공 임대주택('23년 60호, '24년 200호)



◇서울 서계동 예술인 행복주택·문화예술 복합단지(200호, '26.12월 준공예정)

-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창작 공간 지원 확대('23~)
 - (표준공연장)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23)으로 장애·비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창작거점 제공
 - (아트코리아랩) ①창·제작, ②교류·교육, ③시연·유통, ④창업·창직 등 예술 활동 및 예술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조성
 - * (종합지원체계 구축) 예술기업 입주공간, 예술인 상담창구, 각종 강좌 연계, 예술 창·제작 공간 및 지원사업 제공, 공연·전시 공간 및 시연·유통 컨설팅 지원
 - ** 설계 및 시공('22.10~'23.6월), 개관('23.6월 예정), 광화문 인근
 - (해외레지던스) 문학, 시각예술 등 5개 분야 18개 국제 레지던스 등 세계적인 창작 프로그램에 예술인 연계 및 참가비 등 지원(계속, 문예위)
 - * 참가자의 충분한 참여 보장을 위해 '23년부터 참가 기간 연장(9개월→12개월)

추진전략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추진방향

- ◆ 불공정행위·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구제시스템 가동

1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체계마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권리침해 관련 신고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및 피해지원 체계 개편

기존 신고대상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22.9.25) 신고대상 범위 확대

불공정행위

△예술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사업 차별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 △불이익조치 등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및 신고사건의 피해구제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구성 및 운영('23~)
 -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4개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성별·분야별 균형적 구성
 - 예술인권리침해(표현의 자유, 불공정 등), 성희롱, 불이익조치 등 유형별 심사지침 마련(총 8종) 및 세부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3)
 - (지원센터) 권리침해 전문상담(법률·심리), 신고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전담하는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개소('23 下, 대학로)
 - 예술인의 접근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 공간 조성
 - '신고-조사-심의-의결-구제조치' 등 통합형신고관리시스템 구축('23)
 - (분쟁조정 및 피해지원) 상생 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추진
 -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 시범 운영('23~)하여, 예술인 상호 간 또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간 상생 유도
 - 중·장기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산하 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 예술인권리침해 분쟁 관련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예술인 권리보장법 제37조)

- (피해지원) 피해 유형별(공정성 침해, 보수 미지급, 성희롱 등) 지원 기능을 세분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23~)
 - * (예시) 보수 미지급→고용부 대지급금 제도 연계, 성희롱→2차 피해 방지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시범사업 운영 (법률상담, 형사사법절차 조력 등) 및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24)
 - (예방 교육·홍보) 예술인 권리보호(계약, 저작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교육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강 인원 : ('21) 18,797명→('23) 30,000명→('25) 40,000명
 - (대상 다양화) 예비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정례화('23~), 장애예술인(수어·문자통역)등 온라인 동영상 교육('23~)
 - (교육 내실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의 참여로 예술 분야별, 대상별(예술인 예술사업자 및 지원기관 등) 교육콘텐츠 개발('22~)
 - (인식 제고) 예술 분야별로 권리침해 빈도가 높은 유형별 사례집 발간(계속), 기관별 대응 매뉴얼 마련('24~) 등 권리침해 인식 제고
 - (권리보장법 교육·홍보)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배포,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추진 등
 - (공공분야 역할 강화) 예술인보호관(문체부) 및 예술인보호책임자*(예술지원기관) 지정 및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시행('23~)
 -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매뉴얼 마련·배포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부터 업무범위와 조직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23~)
 - 예술분야 공공기관 음부즈맨 제도 운영 및 심의제도 공정성 제고(계속)
- ▲ (예술인보호책임자) 기관별로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예술인 권리영향평가를 수행
 - ▲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권리침해행위 사전예방

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서면계약 체결 지원) 계약서 작성 지원부터 미작성에 대한 피해구제까지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종합 지원
 - * ('21년) 서면계약 체결률 48.7% → ('26년 목표치) 70%까지 제고
 - (법률 상담) 예술 분야별 계약내용, 계약형식 등이 공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 자문단(변호사·노무사 등) 연계 확대('21년 20명 → '24년 35명)
 - (전자계약 체결) 전자우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고 교부·보존할 수 있는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 지원 확대*
 - * 이용지원: ('22년) 63사업장→('24년) 150사업장, ('26년) 예술 전용 플랫폼 마련
 - (홍보 확대) 계약 상담 사례집 배포(계속), 서면계약 실천 확산 예술인 응원 릴레이와 같은 수요자 점점 홍보 강화*('23년~)
 - * (예시)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고 예술인을 지킨다'는 핵심 메시지 활용, 분야별 예술인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서면계약 실천 다짐·응원 메시지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하고, 환경 변화(예술인 고용보험 등) 및 현장 의견 반영한 주기적 검토(계속)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11개 분야 71종 : 공연예술(5), 미술(12), 공예(5), 영화(8), 만화(6), 대중문화(6), 방송(6), 출판(10), 저작재산권(4), 게임(5), 애니메이션(4)

- 표준계약서가 없어 불공정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파악('23) 하여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24~, 예: 레지던시)
- 예술 분야별, 계약서 종류별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 마련('23) 및 실태조사 제도화('25,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 (현장점검) 서면계약 위반 현장점검 주기적 실시('23~, 고용부·문체부)

[주요 점검 분야] 예술인(배우, 기술지원 등)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공연,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방송 제작사*, 지역축제 중 예술용역 등

* 방송, 영화분야 등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합된 현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은 고용부, 근로계약 이외의 용역계약은 문체부가 점검하여 사각지대 해소

- (협력강화) 유관기관(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콘진원, 영진위, 저작위 등) 정례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상황공유 및 관행 개선 추진('23, 연 2회)

③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 (창작대가 현실화)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지원 분야별 창작 대가 관련 기준 정비
[2023년 예술 분야별 창작대가 개편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2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22.2)에 따라 창작대가 지급기준(참여비, 창작 사례비)을 도입, ② 사업별 지원규모 상향 및 정액화 추진* * 우수전시지원 ('21)2~8천만원 → ('22)4천만원~1억원 → ('23)5천만원/1억원 정액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22)최대 3천만원 → ('23)3천만원 정액 		
공연예술창작산실	83억원	문학창작산실 2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계 종사자의 직무별 최소·평균 사례비 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 '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연 시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지발간지원 원고료 평균 단가 상승 적용*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 * '21년 대비 문예지 발간사업 원고료 평균 단가 22.3% 상승 적용

- (공정한 보수체계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 협의하여 창작환경 개선
 - (웹툰분야) 창작자와 업계간 소통창구(상생협의체)를 운영, 수익 배분방식, 창작자 복지증진, 불법유통 근절 방안 등 창작환경에 대한 상생방안 도출
 - * 창작자와 업계간 상생협약 체결('22.12월), 표준계약서 개정('23년 중)
 - (영화분야) 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와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격년 추진, 영화분야 종사자의 근로환경 실태 지속적 파악 노력('22~)
 - * '15년부터 격년으로 연구 수행, '22년 최초로 노사 협의하여 외부에 공개, (주요내용)종사자 규모, 작품경력, 근무기간, 작업시간, 급여수준, 4대보험가입 현황 등 실태조사 및 보수지침 연구
 - (방송제작·연예매니지먼트분야) 노동환경 실태분석, 법령·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정비로 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문체·고용부, '23~)
 - * ▲(방송) 노동환경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완 등 통한 외주제작환경 개선▲(연예) 대중문화 산업법 개정,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불공정 사례 포함,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
- (문화시설 안전관리) 예술인이 안전하게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등 고위험 안전 취약 문화시설 중심 시설 개보수, 소규모 시설 안전진단 지원 등 종합적인 안전 지원
 - 민간의 소규모 공연장 및 미래 종사자 등 대상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 교육, 안전 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등 지원하여 안전문화 정착
 -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23년 4,027백만원

추진전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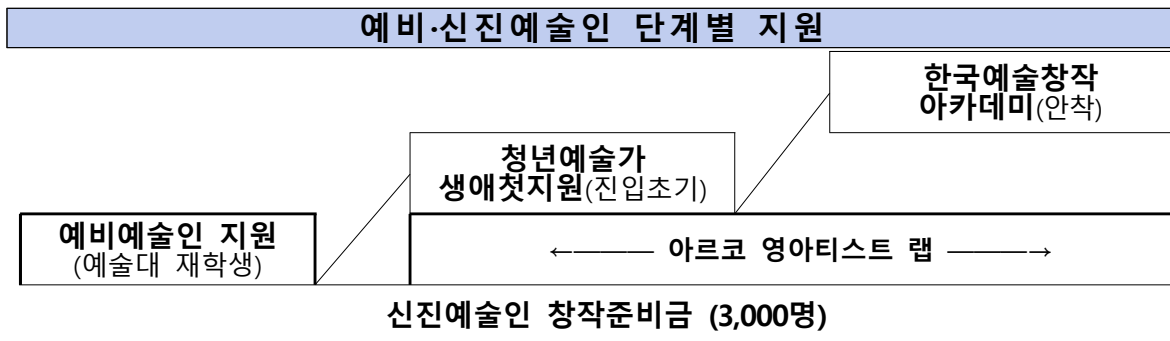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추진방향

- ◆ 경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사회변화에 동력이 되도록 파견지원 사업 개선, 예술인 '예우'제도인 예술인 패스의 편익 확대 등 추진

1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예비·신진 예술인 진입 지원]



- (예비예술인)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의 현장·행정역량 강화 지원*
신설(23년 신규, 57.8억원)로 전업 예술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 지원
* 예술대학의 창작 프로젝트 지원(50억원), 예술 행정 교육프로그램 지원(5억원)
- (신진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2백만원) 지원(3천명)
-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에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네트워킹 형성 등 역량 강화 지원(신진예술인 100명)
* 문화기획서 작성 방법 및 행정기관과의 소통 방법 등 교육
** 예술프로젝트 기획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실습 및 분야별 전문가 상담 등
- (생애 첫 지원) 진입 초기 청년예술가를 위해 문예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 대상 창작 준비·발표 지원(35.4억원)
- (창작아카데미) 청년예술가의 네트워크 및 전문가 교육 지원(15.8억원)

[직업 예술인 일자리 및 직업전환 지원]

○ (일자리 지원) 경험·진입단계, 숙련단계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 민간 공연단체가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경영·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채용 지원**(35억원, 총180명 - 1개년 110명, 2개년 70여명)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합동오디션을 통해 공연이 확정된 **무용단과 출연을 희망하는 무용수 간 일자리 매칭 및 무용수 출연료 지원** (6.3억원, 573명)
- (무대기술인턴십) 무대기술 분야 **입직을 희망하는 청년인력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으로 무대기계·조명·음향 등 분야별 실무경험 축적 및 취업기회 지원(17.7억원, 115명)

○ (창직·전직 지원) 예술 역량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비)예술인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진로 탐색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교육('23년 14.5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예술산업 아카데미) 예술·기술 융합교육, 기업 경영, 창취업 교육 등 예술산업 특화 교육('22년 11억원→'23년 19.1억원, 예술경영지원센터)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예술활동기간이 다소 짧은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②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단편적·소모적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사업의 질적 도약 및 기업에 대한 예술적 개입 성과 확산('23~, 81억원)

- (사업효과성 제고) 2년 이상 다년도 지원 유형 신설, 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통한 사업 성과 관리 강화
- (컨설팅·교육 강화) 컨설턴트(현장전문가)를 통한 **팀별 갈등관리 지원***, **리더예술인 리더십 함양 및 역량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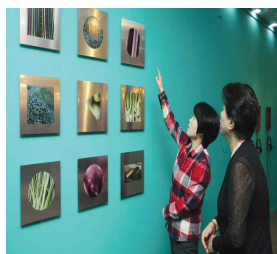
* 현재 일부만 추진 → 전체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컨설팅 강화

**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 계약 및 저작권 이해 교육 등은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변경

- (성과 확산) **성과측정 도구**(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측정 절차 등) 개발*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험적 성과 도출·홍보**

* 성과지표 개발(~'22.12.) → 현장의견 수렴('23) → 시범적용 및 성과 도출·홍보('24~)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례]



◇전통시장 전시회
(현대백화점, 2018)
-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 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인근 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전통 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 개최



◇<브레이브 맘스> 프로젝트
(주)큐비스트, 2021)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및 기업과 미혼모 단체 '인트리'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미혼모 인식개선 엽서·책갈피·영상 등 제작

- (지역·사회에 대한 예술적 개입)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 도모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
 -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의 사람·역사·지리·문화 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일상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3개소, 3억/2개년도 지원)
 - *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협업하여 예술이 마을에 상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추구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공공의 문제해결을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체계화(연구→활용→주제심화)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23년 34개사업, 31억)
 - * '주제심화' 단계는 다년간(2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22년 5건 → '23년 7건) 하여 지역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물 창출 유도

3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등 전개('23~)
 -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후원 활성화 캠페인 추진 및 예술가치 및 예술후원 인식 제고
-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 기업의 예술단체 결연 지원 확대 추진, 문화예술후원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계속)
 - (후원기업 지원) 예술후원 기업 지원(예술지원 매칭펀드) 확대, 문체부 인증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매개인력 양성)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 교육 및 양성*, 기업 후원 담당자·매개인력(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등)간 네트워크 지원
 - * 예술단체 종사자,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등 후원 매개인력 대상 단계별 (입문·실무·심화)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과정 활용하여 교육인원 확대(100명 이상)
 - (공동 프로젝트) 잠재적인 후원 기업을 발굴, 기업과 공공프로젝트 연계하여 프로젝트 참여 예술인·예술단체 등과 후원 연결 지원('23~)
- (예술인 패스 확대) 예술인 문화예술 분야 소비 지원을 위해
 - ▲ 제휴기관 확대 ▲ 실생활연계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개선 추진('23~)
 - 금융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과 연계, 적용 범위 확대 등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추진방향

- ◆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앙-지역간, 복지지원기관-문화예술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예술인복지정책의 문화예술정책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분산 실현

1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23~)
 -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복지재단의 법적 임무 명확화
 - ▲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 선별 절차인 '예술활동 확인제도' 전담 기관으로 위상 강화
 -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재단 사무로 명확화
 - 사회보장제도 및 통계 등의 데이터 기반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연구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24~)

현재 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일부 사회보험제도 안내 복지지원금 집행 중심 과도한 행정업무 권리 예방교육 중심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 간 중간 매개자 역할 수행 복지제도 연구, 예술인 통계 분석 등 기획·연구기능 강화 행정업무 전산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운영 효율화 예술인 직업 교육 및 훈련 등으로 기능 확대

2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예술인 지원 거점 마련) 광역 단위의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 센터(가칭)' 지정 및 운영지원 추진(문체부)

[지역별 예술인 복지정책 현황(2022,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
▲ (조례제정) 광역시·도 17개 및 기초지자체 47개(20.4%)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10개 광역문화재단 운영 중이며, 부산이 최초 설립(2017년), 전북·경기·경남·대구·인천·전남·제주·광주·충남 지역 센터 운영 중

- (23) 지원센터 지원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 지역별 수요조사 → (24~) 일부 지역 시범운영 후 평가 통해 확대 추진
- (지원내용) 지역 예술환경에 맞는 복지지원체계 마련* 위해 인력 배치, 운영비 지원(지방비 매칭), 통계·정보공유,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적합한 지원대상 선정하도록 예술활동확인 업무 분산 (예술인 소재지 센터에서 신청건 접수 및 행정심의, 추후 분산범위 확대)
- (실무 협의 조정 기구)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23~)
 - * (구성)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 (공공기관 협력)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으로, 기관 간 주기적 소통을 통한 현안 공유 및 연계·협력 촉진(23~)
 - 예술인 경력정보 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술인 지원정보 공유
 - 장르별·사안별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23~)
- (유관 부처)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관련 유관 부처* 협력 강화

예술인 복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예술인 사회보험정책	예술인 상병수당, 의료비지원,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	테마형 예술인주택 등 예술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예술인 규모, 복지실태 등 분석을 통한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권리 보호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면계약 문화 (근로계약, 용역계약 관련 합동점검)	예술활동 관련 인권 보호, 차별행위 구제 등 인권보장정책	불공정계약, 약관의 통보 등 불공정거래 방지정책	성폭력 수사의뢰, 피해자 보호 성폭력방지정책

참고 : 관계기관 협력과제

- ① (고용부·문체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서면계약 체결 등
 - ①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의 예술인 대상 안내·홍보
 - ② (산재보험) 산재 발생 시 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③ (서면계약)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근로·용역계약 혼합 분야는 합동점검, 이외의 용역계약은 문체부 점검하여, 사각지대 해소
 - * 예술인복지재단, 콘진원, 영진위, 저작위 등과 협력강화
- ② (국토부·문체부) 예술인 대상 △주거공간 및 예술활동에 적합한 특화공간 등 지원하면서,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문예위 등과 협력강화
- ③ (문체부·사보위) 예술인 복지실태 심층 분석을 위한 예술활동증명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추진
 - 사회보험정보(4대보험 등), 사회보장정보(생계·의료급여 등), 과세정보(근로·사업소득 등) 분석을 통한 예술인의 사회보장 실태 도출

VII.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전략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 예술인 정의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23
○ 예술인 복지법 등 법·제도 정비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23~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예술활동증명제도 개편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23~
○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23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기재부	'23~
③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 예술인 실태조사 개선	문체부	예술인	'23~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문체부, 한국문화 정보원, 예술인 복지재단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부, 국세청, 통계청	'23~
○ 예술분야 직무체계 분류 연구	문체부, 문광연	예술인	'23~
○ 예술인 지원 정보플랫폼 홍보	문예위, 예술경영지원 센터 등	문체부	계속
[전략 2]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①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고용부 문체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단체	'23~
○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개선	고용부 문체부	근로복지공단, 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단체	'23~
○ 사회보험료 지원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	기재부	계속
○ 사회안전망 다양화	문체부, 고용부	기재부, 예술인복지재단	'23~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 금융서비스 지원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기재부	계속

②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23~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모델확립 및 확대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돌봄센터	'23~
○ 상해예방 및 치료지원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문체부	계속

③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내실화

○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내실화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	기재부	'23~
○ 수혜자 맞춤형 컨설팅	문체부,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23~

④ 예술인 생활·창작공간 다변화

○ 공공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국토부, 지자체, 문예위	문체부	'23~
○ 창작공간 지원(아트코리아랩)	문체부, 예경 지자체		'22~'23
○ 창작공간 지원(해외레지던스)	문예위	문체부	계속

[전략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①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예술사업자	'23~
○ 예술인권리보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예술사업자	'23~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체부		'23~
○ 분쟁 조정 제도 운영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23~
○ 피해지원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23~
○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시범 운영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24~
○ 대상별 맞춤형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형별 사례집 발간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공공문화예술기관 예술인 예술사업자	계속
○ 예술인보호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시행	문체부	공공문화예술기관	'23~
○ 공공기관 옴부즈맨 제도 운영 등	공공문화예술기관		계속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서면계약 원스톱 지원체계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계속
○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실태조사 방안 마련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지원기관, 예술인	'23~
○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지원, 개발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23~
○ 서면계약 홍보, 안내교육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사업자, 예술인	'23~
○ 현장점검	고용부,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콘진원, 영진위, 저작위 등	'23~
③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 창작대가 현실화	문체부, 문예위	예술지원기관	계속
○ 공정한 보수체계(웹툰, 영화분야)	문체부, 콘진원, 영진위	예술지원기관, 예술인	계속
○ 문화시설 안전관리	문체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단체	계속
[전략 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①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 (예비·신진) 예비예술인 역량강화	문체부, 예술대학	예술대학생	'23~
○ (예비·신진) 창작준비금, 멘토링 프로그램 등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 민간기업, 예술대학	계속
○ (예비·신진) 청년예술가 창작준비 등 지원	문체부, 문예위	청년예술인	계속
○ (예비·신진) 청년예술가 네트워크·전문가교육 등 지원	문체부, 문예위	청년예술인	계속
○ (직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	문체부, 전국무용수지원센터, 문예위 등	예술인	계속
○ (직업) 창직·전직 지원	예술교육진흥원, 예경, 전국무용수지원센터 등	예술인	계속
②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민간기업, 예술단체	계속
○ 마을미술 프로젝트	문체부, 문예위	예술인, 예술단체	계속
○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	문체부, 문예위	예술인, 예술단체	계속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③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 대국민 캠페인	문체부 공공문화예술기관 등	예술단체	'23~
○ 기업의 예술단체 결연 지원 확대	문예위	민간기업 예술단체	계속
○ 예술인 패스 편익 확대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재휴기관	'23~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① 중앙-지역의 협력 및 예술인 복지 전담 조직 기능 확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역량 강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기재부	'23~
-------------------	----------------	-----------------------	------

②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예술인 지원 거점기구	문체부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	기재부, 예술인 복지재단	'23~
○ 지역예술인 복지협의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23~
○ 공공기관 협의체	문체부, 공공문화예술기관		'23~
○ 분야별 민관위원회	민간위원 문체부	예술인, 예술단체	'23~
○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유관기관 협력	문체부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통계청, 인권위, 공정위, 경찰청	'23~